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주용 의원)

의안 번호	254
----------	-----

발의연월일: 2020년 06월 08일

발 의 자: 이주용 의원

찬 성 자: 박찬원, 이명순 의원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상 재한외국인, 다문화가족에 대해 특별한 처우 수립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지급대상자에 결혼 이민자 및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를 추가하고자 함에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가 있음

2. 주요내용

조례안 제3조(지급대상자)에 “평창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 이민자” 및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평창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자”를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평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나. 예산조치 :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2020. 05. 29. ~ 2020. 06. 05.(7일간), 제출된 의견 없음

라. 집행기관의견수렴 : 2020. 05. 29. ~ 2020. 06. 05., 아래표 참조

조례안	제출 의견(안전건설과,기획실)	의회 의견
<p>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3조(지급대상자) 재난 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 대상자의 거주요건은 <u>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u></p>	<p>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3조(지급대상자) <u>재난 기본소득은 지급기준일부터 신청일까지</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수용】</p>
<p>(제3조 중 제4호 신설)</p>	<p><u>“4. 부 또는 모가 제1호에 해당되고, 신청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친 사람”</u> 를 추가함.</p>	<p style="text-align: center;">【불수용】</p> <p>신설하고자 하는 제3조 중 제4호는 제3조제1호(대한민국국적의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에 해당되어 신청일 기준하여 지급이 가능하다 판단됨</p>

평창군조례 제 호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급대상자) 재난기본소득은 지급기준일부터 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평창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평창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급대상자) <u>지급대상자의 범위는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창군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한다.</u> (생략)</p>	<p>제3조(지급대상자) <u>재난기본소득은 지급기준일부터 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평창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평창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2. 29., 2011. 3. 29., 2012. 2. 22.,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5. 7. 24., 2016. 1. 7., 2017. 1. 17., 2017. 7. 26., 2018. 9. 18.>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11.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무선통신망을 말한다.[전문개정 2010. 6. 8.]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2. 30., 2015. 7. 24.>

[전문개정 2010. 6. 8.]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전문개정 2010. 6. 8.]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

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1. 21.>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5. 12. 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 2. 1.>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① 제10조 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이하 "일반체류자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체류목적, 취업활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20.]

□ 평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평창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한 실·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3조제13호 및 제23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관련법령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하므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주요업무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중요한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5. 이의 신입 심의에 관한 사항

6. 국유재산의 대부 심사 및 군납에 관한 사항
7. 행정사무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8.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개정 2015. 10. 08>
10. 농촌공장 유치에 관한 사항
11.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12. 삭제<개정 2015. 10. 08>
13. 삭제<개정 2015. 10. 08>
14. 삭제<개정 2015. 10. 08>
15. 주요물자수급계획 및 물가동향, 분석에 관한 사항
16. 군 건설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17. 연료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18. 방역대책협약에 관한 사항
19. 삭제<개정 2015. 10. 08>
20.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21.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 규정에 의한 행정규제의 심사·정비등에 관한 사항
22. 삭제<개정 2015. 10. 08>
23.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①위원회는 매주 수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 10. 08>

②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장은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은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서 행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

수인 경우에

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⑦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제3조(지급대상자) 재난기본소득은 지급기준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평창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평창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부 칙

제2조(‘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특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재난과 관련하여 군수는 평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1인당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현금, 유가증권, 물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1) 금번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군비 100%로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추계한다.
- 2) 향후 유사한 재난 발생 시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추계가 불가능하여 금번 재정 소요에 한하여 작성한다.
- 3) 관내 결혼이민자(F-6)와 영주자격자(F-5) 체류자격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추계한다.(출처: 외국인 정보시스템, 기준: 2020. 05. 27.)

나. 추계 결과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의2 장기체류자격 중 결혼이민(F-6)자와 영주자격자(F-5)까지 확대하면 176명이 추가지원을 받아 1인당 20만원을 지원할 경우 35,2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재원조달 방안

재원은 전액 자체수입으로 조달한다.

3. 비용 추계결과

작성자	평창군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연락처	(033) 330 -2406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찬성의원 서명(날인)부

○ 발의 : 이주용 의원

구분	직 위	성 명	서명(날인)
1	평창군의회 의원	박찬원	박찬원
2	평창군의회 의원	이명순	이명순